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안검색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06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2214306)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보안검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50조)	3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221430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7.
3. 회 부 일 : 2025.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Ⅲ. 검토의견

1. 보안검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50조)

개정안은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을 처벌대상에서 삭제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 ~ ③ (생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u>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u>	2. ----- ----- <u>아니한 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u>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u>	2. ----- ----- <u>아니한 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15조에서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의무를 두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직접 수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한편, 현행법 제50조는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벌칙 구성요건 중 ‘소홀히’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1)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나,²⁾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보안검색 절차의 일부 생략, 형식적 실시, 결과 확인 미비 등 어느 정도의 위반이 ‘소홀히’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보안검색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정도로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항공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상사고와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항공보안사고의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행법에서는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를 삭제하는 대신에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보완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현행법 제50조의 처벌대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을 유사 입법례와 같이 ‘**보안검색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

2)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함으로써 **현행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³⁾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법명	위반내용	처분
건축물관리법 제51조(벌칙)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 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철도건설법 제45조(벌칙)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 를 일으킨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안전법 제51조(벌칙)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 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3)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의안번호 제2215095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안, 배준영의원안)을 각각 심사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5.9.25.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의 내용과 동일함.**

- [221406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2025.9.25.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2차 본회의 2025.11.13. 부결**

법명	위반내용	처분
저수지댐법 제30조(벌칙)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u>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u> <u>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u> 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연구실안전법 제43조(벌칙)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u>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u> <u>연구실에 중대한 손괴</u> 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국토교통부 의견

보안검색을 소홀히 하여 처벌하는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취지에 동의하나, 처벌공백 및 업무 경각심 저해 우려로 검색을 미이행한 경우뿐 아니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토록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